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0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윤종군・김우영・이재강

서영석 · 김태년 · 이기헌

이춘석 · 남인순 · 박홍근

박성준 · 김태선 · 서미화

의원(12인)

찬 성 자: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1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사유가 있어도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 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등).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수원 다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③ 취수원의 변동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수도사업자는 취·정수장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수도정비기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용역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7조제6항 또는 제7항" 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 (생 략)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
	하여 취수원 다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전략을 추진
	<u>하여야 한다.</u>
<u>②</u> ~ <u>⑥</u> (생 략)	<u>③</u> ~ <u>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취수원의 변동 등으로 상수
	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
	<u>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u>
	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
	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1. 제7조제6항 또는 제7항-----

- ④ 수도사업자는 취·정수장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 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⑤ 제4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 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 는 변경을 위한 용역을 포함한 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9)</u> <u>제7항</u>	

제83조(벌칙)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